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양 덕 식

편집 : 문화정보실장 김 경 호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제 453 호

1974. 7. 27.

# 시 보

차 례

## ◎ 조 례

제 866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..... 3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**조 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4. 7. 27.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866 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제 1호 가입금액표

구 분	가 입 금 액 조	
	신 설	개 조
내 경 13 미 리	30,000 원	개조시에는 신규구경별 가입금의 차액을 징수한다.
내 경 20 미 리	80,000 "	
내 경 25 미 리	130,000 "	
내 경 40 미 리	330,000 "	
내 경 50 미 리	510,000 "	
내 경 75 미 리	1,100,000 "	
내 경 100 미 리	2,000,000 "	
내 경 150 미 리	4,500,000 "	
내 경 200 미 리	8,000,000 "	

※ 내경구분은 양수기 구경을 기준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공작승인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회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가입금을 징수한다.